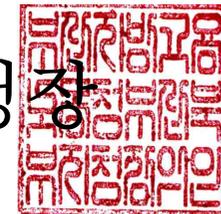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O석	78. 9. 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78번길 19 대경4차 30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	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2회 미제출 ② 출석통지 2회 미출석 및 연락 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4. 7. 16. ~ 2024. 8. 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정화숙(전화 051-330-98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